

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

1. 서설

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. 특히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, 내년(2021년)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예정임에 따라 종전과 변경되는 내용이 무엇인지, 어떠한 공휴일이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.

2. 관련 법규¹⁾

1) 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

-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0.>
-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3. 20.>

2)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(휴일)

- ① <생략>
-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"이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각 호(제1호²⁾)는 제외한다)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.

1)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사업자의 경우도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.

2) 일요일

3) 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)

① <생략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1.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: 통상임금의 100분의 50
2.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: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

③ <생략>

4) 위반 시 벌칙

□ 근로기준법 제110조(벌칙)

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□ 근로기준법 제109조(벌칙)

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)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3. 종전과 변경되는 내용(요약)

구분	내용
변경 전	<p>■ 원칙은 관공서 공휴일에 출근하여도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음. 단, 취업규칙에 약정유급휴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발생 함.</p> <p>◎ 휴일로 인정 되지 않아 휴일 대체가 적용되지 않았음.</p>
변경 후	<p>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취업규칙 규정의 유무와 무관하게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되어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발생함.</p> <p>◎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적용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함.</p>

4.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공휴일은 어떤 날들이 있는지?

1) 30인 이상 사업장에 2021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은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 제2조(공휴일) 중 **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**과 제3조(대체공휴일)가 적용됩니다.

2)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

제2조(공휴일)

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.

1. 일요일
2. 국경일 중 3·1절, 광복절, 개천절 및 한글날
3. 1월 1일
4. 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 (음력 12월 말일, 1월 1일, 2일)
5. 석제 <2005. 6. 30.>
6. 부처님오신 날 (음력 4월 8일)
7. 5월 5일 (어린이날)
8. 6월 6일 (현충일)
9. 추석 전날, 추석, 추석 다음날 (음력 8월 14일, 15일, 16일)
10. 12월 25일 (기독탄신일)
- 10의2. 「공직선거법」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
11.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

제3조(대체공휴일)

- ① 제2조제4호(설날) 또는 제9호(추석)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.
- ② 제2조제7호(어린이날)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.

제373호

2020.11.30.

노무법인 두레